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체 육 시 설 의 설 치 · 이 용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양우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체육시설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(2020.5.19. 법률 제17267호 / 시행 2020.11.20.)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별표2, 안 제22조)

- 1)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(별표2)에 ‘체육교습업’을 신설
- 2)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(안 제22조의 2항) 신설

나. 기업현장 핵심규제(안 제16조 1항) 및 일몰규제(안 제12조 제1호)에 관한 사항

- 1) 등록 체육시설 준공시 중복 법령에 따른 이중행정 개선(안 제16조 1항)
- 2) 대중제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으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(안 제12조 제1호 삭제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련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호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에 따라 준공보고서 제출을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22조의 제목 “(무도학원업자·무도장업자의 준수 사항)”을 “(무도학원업자·무도장업자·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교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야간시간(24시~5시)에는 교습을 하지 아니할 것
2.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사업계획 승인의 제한) 시 ·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할 수 없다.	제12조(사업계획 승인의 제한)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 <u>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</u> <u>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</u> <u>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</u> <u>설로 전환하려는 경우</u>	<삭 제>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 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) 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 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 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하고,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(제21 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하였을 때를	제16조(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 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포함한다)에는 준공보고서를 관
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
한다. <단서 신설>

② ~ ④ (생략)

제22조(무도학원업자·무도장업
자의 준수 사항) (생략)

<신설>

---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
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에 따라
준공보고서 제출을 관할 시·도
지사에게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
준공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
있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무도학원업자·무도장업
자·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)

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음)

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
교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야간시간(24시~5시)에는 교
습을 하지 아니할 것
2.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
제공하지 아니할 것.

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(제6조 관련)

업 종	영 업 의 범 위
1. 스키장업	눈, 잔디,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
2. 썰매장업	눈, 잔디,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(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)을 경영하는 업
3. 요트장업	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(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)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
4. 빙상장업	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
5. 종합 체육시설업	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
6. 체육도장업	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
7. 무도학원업	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(볼룸댄스) 과정을 교습하는 업(「평생교육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·등록·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·운영하는 경우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)
8. 무도장업	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(볼룸댄스)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

9. 가상체험 체육 시설업	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 <u>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직접 이용료 등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운동에 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·강습·훈련하거나 교육하는 업(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</u> <u>1. 농구</u> <u>2. 빙상</u> <u>3. 배드민턴</u>
<u>10. 체육교습업(신설)</u>	<u>4. 수영</u> <u>5. 야구</u> <u>6. 롤러스케이트(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.)</u> <u>7. 줄넘기</u> <u>8. 축구</u> <u>9. 제1호에 제8호까지의 운동을 하나 이상 포함한 여러 종목의 운동(종합교습업)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156